# 학 칙



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·학사운영·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육목표)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술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·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3조(명칭) 본 대학은 국제예술대학교라 한다.

제4조(위치)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7(논현동)에 둔다.

제5조(설치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) 본 대학에 두는 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06.14> <개정 2022.06.22.> <개정2024.07.10.>

구 분			입학정원	계	
계열/학과/전공				주간	Л
예 계	JIO 301	음 악 과	실용음악	168	354
			스튜디오작곡		
		공연예술과	스튜디오작곡	186	
			연기예술		
			공연기획		
			무대예술		
			뷰티아트		

#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제6조(수업연한)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(4학기)으로 한다.

제7조(재학연한)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# 제3장 학년도·학기·수업일수 및 휴업일

제8조(학년도)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학기)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고, 학사일정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

- 공.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
  -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.
  - ③ 천재지변,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  - ④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.
- 제11조(휴업일)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,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국정공휴일
  - 2. 일요일
  - 3. 개교기념일(4월 28일)
  - ②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.
  - ④ 총장은 비상재해.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# 제4장 입학(편입학·재입학 포함)

- 제12조(입학시기)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편입학과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.
- 제13조(입학자격)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- 제14조(입학지원절차)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총장이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.
- 제15조(입학전형)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<개정 2019.01.23.>
- 제15조의 2(대학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영향 평가) ① 본 대학의 학과별 고사(논술 등 필답고 사, 면접·구술고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  -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6조(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)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 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7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)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·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8조(입학허가) 입학(편입학 포함)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,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9조(입학취소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 - 2.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
  - 3. 이중학적을 가진 자
  - 4.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
- 제20조(산업체 위탁교육)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, 위탁교육의 경비의부담 및 납부방법,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활용,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1조(편입학)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평생교 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편입학할 수 있다.
  - 1. 1학년 2학기 편입은 16학점 이상 취득자
  - 2. 2학년 1학기 편입은 32학점 이상 취득자
  -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한다. <개정 2019.01.23.>
- 제22조(재입학)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 (전공)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 - ③ <삭제><개정 2019.01.23.>
- 제23조(전과)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전과 인원은 전입·전출 학과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전과한 자는 총장이 정한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4조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지정서류에 의거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제24조의 2(장애학생 학점 등록)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등록을 허가하고.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.
  - ②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학생의 재학 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하며,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6.14>

### 제5장 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

- 제25조(휴학) ① 질병, 병역의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  -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창업휴학을 하고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 허용한다.
  - ③ 휴학은 군휴학,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.
  - 1. 군휴학 :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. 휴학기간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정한다.
  - 2. 일반휴학 : 질병, 해외연수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· 의원 전문의(한의사 포함)진단서,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④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2분의 1이상 출석한 경우 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의 방법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  -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.
  - ⑥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,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.
- 제26조(복학)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. ②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
- 제27조(자퇴) ① 질병, 가정형편,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(이하 "자퇴"라한다)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다만, 사망, 실종 등의 경우는 보호자의 신고로 자퇴처리한다.
  -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.
- 제28조(제적)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.
  - 1.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
  - 3.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  - 5.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

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.

# 제6장 교과 및 수업

- 제29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로 구분하며,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%~20%, 전공교과 80%~90%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%의 범위 안에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04>
  - ② 각 과별 교육과정(현장실습 포함)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③ 각 과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.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.<신설 2022.02.04>
- 제29조의 2(현장실습 교육과정) ① 현장실습교과는 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4주 이상의 단기 현장실습(계절제)과 학기단위의 실습학기제(학기제)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하다. 단,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교과목으로 지정(야간과정 및 산업체위탁생 제외)할 수 있다.<개정 2015.11.07.>
  - ②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160시간 이상 실습시 3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,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.<개정 2019.01.23>
  - ③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0조(교육과정의 연계운영)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, 전공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과정 상호 연계운영의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 등과, 대학 및 산업체로 하며,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③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제31조(계약학과)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 정 또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2025.02.05.>
- 제32조(교과의 이수단위)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당 15시간 이상의 수 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전공실기 등 실기교과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04>
  - ② 수업연한 2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5학점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전공, 교양교과는 학과에서 개설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 <개정 2019.01.23>
  - ③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. 다만 사회봉사 교과목과 직무실습 교과목은 예외로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<개정 2019.01.23> <개정 2022.02.04>

- 제33조(학점인정) ① 국내·외의 다른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통신대학·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  - ②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·연구 또는 실습 등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% 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  - ③ 「병역법」에 따라 군복무 중 인 휴학생이 방송 통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,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08.> <개정2024.07.10.>
  -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(수업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원격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,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②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.
  -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2주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.
  - ④ 강좌는 08:00부터 23:00까지 개설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⑤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21.01.08>
- 제34조의 2(계절수업)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  -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의 3(집중수업) ①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의 4(원격수업) ① 원격수업의 개설은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원격수업은 본 대학 교원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.
  - ③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의 5(교수시간)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(학기당 15주)를 기준으로 정한다.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,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의 6(이동수업)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업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수업의 대상, 전공분야, 설치과정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<신설 2018.06.14.>
- 제34조의 7(장애 학생 수업지원)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6.14.>
- 제35조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에 교육과정표,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안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총장의 허가로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③ 장애학생의 수강신청은 장애유형에 따라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수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.
- 제36조(출석) 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
  - ② 학생 가정의 상고 및 학생의 질병, 징병검사, 예비군교육 등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취업한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1.23>

#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

- 제37조(시험)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, 실기시험 등을 병용하되 그 실시(중간, 기말, 수시시험 등)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② 각 교과목의 총 수업 시간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당해 과목의 학점은 미 취득(F)으로 처리한다. 다만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- ③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+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  - ④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8조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상황, 평소 학업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. 다만, 실험, 실습,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  -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O 급 이상으로 한다.

	배 점	평 점	비고
$A^{+}$	100 ~ 95	4.5	
$A^0$	94 ~ 90	4.0	
$\mathrm{B}^{\scriptscriptstyle{+}}$	89 ~ 85	3.5	
$\mathrm{B}^{\scriptscriptstyle 0}$	84 ~ 80	3.0	
$C^{+}$	79 ~ 75	2.5	
C <sup>0</sup>	74 ~ 70	2.0	
$\mathrm{D}^{\scriptscriptstyle +}$	69 ~ 65	1.5	
$D_0$	64 ~ 60	1.0	
F	59 이하	0	
Р	-	불계	

-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.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.
- (4) <삭제>
- ⑤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9조(성적불인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- 1.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
  - 2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
  - 3.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
  - 4.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
- 제40조(학사경고)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학사경고 하여야 한다.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1조(졸업 및 수료) ①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.<개정 2022,06.22.>
  - ② 다음 각 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1. 1학년 수료 : 36학점 이상 <개정 2022.02.04.>
  - 2. 2학년 수료: 75학점 이상 <개정 2019.01.23>
  -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 후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2조(졸업연기) ① 제41조제1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자격증취득,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훈련 등의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.
  - ② 졸업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9.01.23>
- 제42조의 2(학위의 취소) 제41조의 1 내지 3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<신설 2016.1.12>

### 제8장 평생교육

- 제43조(학점은행제) ① 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48학점이상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의 전문학사학위증서를 수여 할수 있다.
  -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4조(비정규특별과정)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치한다.
  -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45조(시간제등록제)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.
  - ② 모집인원은 통합반 및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% 이내로 한다.
  - ③ 모집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의 성적 등과 당해 연도 본 대학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.
  - ④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⑤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2025.02.05.>
  - ⑥ 시간제등록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동일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이고, 다른 학교 및 학점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 이상일 때에는 당해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다.
  - ⑦ 별도반은 주말 또는 특정기간을 활용하여 4주이상의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.
  - ⑧ 기타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9장 학생활동

- 제46조(학생자치기구) ① 본 대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풍을 조성하며,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,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총학생회(이하 "학생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-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, 휴학이나 제적,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  -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7조(회비)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8조(학생단체의 조직)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9조(학생의 의무)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수업,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.
  -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, 사전에 목적, 개최일시, 장소, 참가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승인 받아야한다.
- 제50조(학생지도)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 전반을 지도하되,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을 통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

로 정한다.

제51조(처벌)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.<개정 2021.01.08>

### 제10장 규율과 상벌

- 제52조(규율) 학생은 학칙과 각종 규율을 준수하고, 성심성의로 학업에 임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53조(포상)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4조(징계)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.<개정 2021.01.08>
  - 1.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
  - 2.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
  - 3.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
  - ② 징계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.
- 제55조(성희롱 예방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2.02.04.>

# 제11장 등록금

- 제56조(등록금) ①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(이하 "등록금"이라 한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2.04.>
  - ② 실험 또는 실습비, 학생자치회비,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04.>
- 제56조의 2(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)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, 8인으로 구성한다.
  -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2019.01.23>
- 제57조(등록금의 반환)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  - 1.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
  - 2.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·사망·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- 3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
- 4.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호에 의거 다음 각 호 대로 반환한다.<개정 2022.02.04.>
- 1. 당해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) 이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- 2.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 한다.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	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아니함

- ③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.01.23>
- ④ 등록금은 결석·징계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- 제58조(등록금의 면제)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# 제12장 장학금

- 제59조(장학금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입학시 입학성적이 우수한자
  - 2. 재학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생활이 극빈한 자
  - ②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휴학, 퇴학,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  -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 제13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

- 제60조(구성)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,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.
- 제61조(소집 및 심의)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.
  -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.
  -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8.06.14>
- 제62조(교무위원회)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8.06.14>

- 1.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입학·진급·졸업에 관한 사항
- 3.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, 처장, 학과장,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3조(제위원회) ① 총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1.23>
  -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4장 직 제

- 제64조(교직원) ① 본 대학에는 총장과 교원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.
  - ②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
  - ③ 직원은 일반행정직, 기능직으로 한다.
  -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, 초빙교원,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  - 1. 겸임교원 :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
  - 2. 초빙교원 :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  - 3. 강사 :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
- 제65조(직제) ① 본 대학에는 사무처, 교무처, 학생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
  - ②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- ③ 각 처 및 기타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## 제15장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

- 제66조(산학협력단)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25.02.05.>
- 제67조(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)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.<개정 2022.06.22.>
  - 1. 국제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
  - 2. 국제예술대학교 생활관 <신설 2019.01.23.>
  - 3. 국제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<신설 2022.06.22.>
  -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# 제16장 학칙 개정 절차

- 제68조(학칙 개정)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③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69조(심의 및 공포) 공고(사전예고) 절차를 거친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.
- 제70조(보고) 총장은 학사운영, 학생의 신분변동,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17장 보칙

제71조(시행세칙)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"국제예술전공대학"을 "국제예술대학"으로 교명변경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공연기획전공 신설 및 야간 정원의 전공 별 구분 삭제, 별표 1의 공연기획 예술전문학사 추가 및 실용음악전문학사를 음악전문학 사로 변경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입학정원 학과 단위로 표기, 제17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변경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 도로명 주소 적용, 제5조 무대예술 전공 신설 및 입학정원 구분, 제25조(휴학) 군휴학 규정 개정, 별표 1의 무대예술 예술전 문학사 추가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및 별표 1의 클래식전공을 스튜디오 작곡으로 변경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주간 정원 9명 증원, 야간 정원 삭제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뷰티아트 전공 신설, 제67조 학칙 개정안 공고일 변경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연기예술 전공 신설, 제24조 2 장애학생 학점 등록, 제34조의 6 이동수업, 제34조의 7 장애학생 수업지원 신설)

#### 부 칙

- ① 이 학칙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2조(교과의 이수단위) 및 제41조(졸업 및 수료)의 졸업 이수학점 변경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,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34조 감염병 등 위기단계 발생시 운영 사항신설, 제51조 및 제54조 학생상벌 심의위원회 개정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(제29조 교직과정 운영 사항 신설, 제32조 전공실기 교과의 이수단위 개정 및 최저이수학점 개정, 제33조 군복무중 이수학점 개정, 제41조 수료 학점 개정, 제55조 법조문 반영 개정, 제56조 및 57조 법조문 반영 개정)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 학과 입학정원 조정, 제41조 학위명 수정, 제66조 국제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신설)

#### 부 칙

- ① 이 학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조 설치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② (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25학년도 모집을 중지하는 공연예술과 뮤지컬전공 재적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. 단, 2025년 2월 28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졸업하지 못한 소속 재적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고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의사에 따라관련 규정에 의거하여, 유사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① 이 학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(제31조 계약학과 신설, 제45조 시간제등록제 신청학점 수정, 제66조 산학협력단 신설 법조문 반영, 제66조 ~ 제70조 조번호 변경)

# [별표 1]

# 각과별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

학 과 / 전 공		학위명	
음 악 과	실용음악	음악전문학사	
	스튜디오작곡	음악전문학사	
	스튜디오작곡	음악전문학사	
	뮤 지 컬	예술전문학사	
- 공연예술과	연기예술	예술전문학사	
- 유전에돌과 -	공연기획	예술전문학사	
	무대예술	예술전문학사	
	뷰티아트	미용전문학사	

[별지	제1호	서식]

제 호

# 학 위 증 서

○ ○ ○ 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[ ]학년도 본 대학 [ ]과(전공)의 전과 정을 이수하여 [ ]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

년 월 일

국제예술대학교총장 ○○○

학위등록번호 : 국제-〇〇〇-〇〇〇 (국제-수여연도-일련번호)

\_\_\_\_\_

[별지 제2호 서식]

제 호

수 료 증 서

○ ○ ○19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[ ]학년도 본 대학 [ ]과(전공) [ ]학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국제예술대학교총장 ○○○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 호

학 위 증 서

성 명 () () () 주민등록번호 전 공

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[ ]전문학사의 학위를 수여함

년 월 일

국제예술대학교총장 ○○○

학위번호 : 국제-학점-○○○-○○ (국제-학점-수여연도-일련번호)